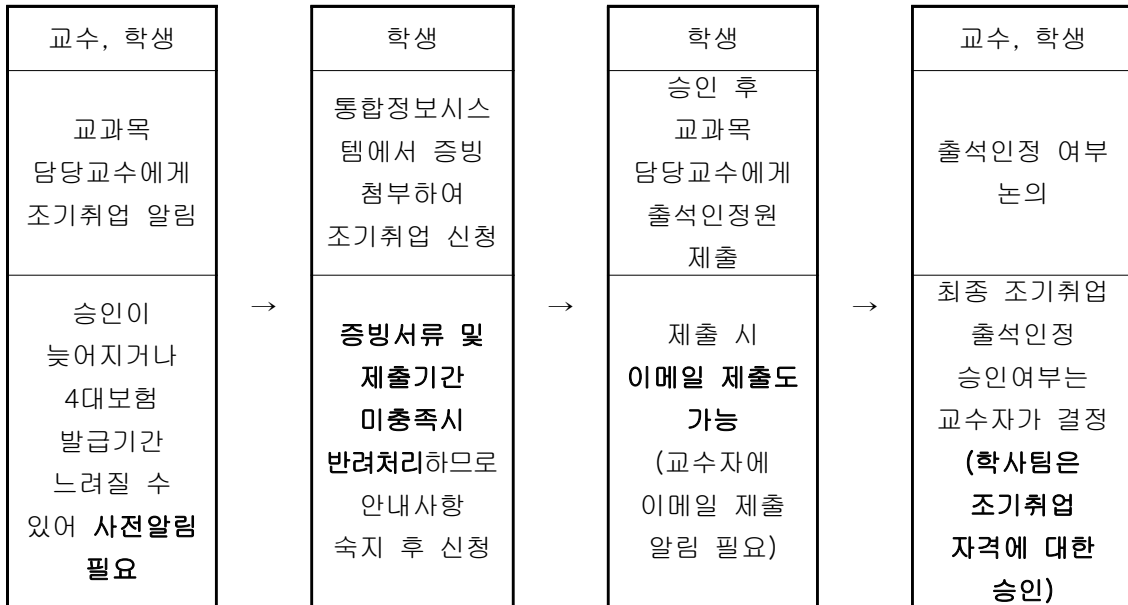


<조기취/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안내>

I 신청대상자

- ① 졸업전 마지막 학기 취/창업자 대상
 - 직계존속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취업자 적용 불가
 - 창업자는 창업업종이 소속학과와 관련된 창업만 인정
- ② 신입직원 연수 등의 일정도 취업자로 포함
 - 해당학기 임용필요, 교수에게 사전 알림 후 4대보험 제출 가능시 신청

II 신청단계



- ※ 재직증명서는 일절 받지 않고, 4대보험 가입확인서로만 증빙가능
- ※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일시가 제출일시 안에 포함되 있어야 인정

III 시스템 접속 경로

통합정보시스템→학사행정→교과수업→출석관리→출석인정신청

IV 제출 서류 및 제출 기간

<1차 신청 기간 신청자 : 2.24~5.15>

구분	제출서류	제출기간 및 서류 발급일시 (발급일시가 기간내인 서류만 인정)
조기취업자 (근로자)	4대보험 가입확인서(1차)	2.24~5.15
	전공 SDU 신청서	2.24~3.3(이후신청절대불가)
	4대보험 가입확인서(2차)	5.16~5.30 (추가신청X, 기존 신청사항에 첨부파일 추가)
조기창업자 (창업자)	4대보험 가입확인서	2.24~5.15
	창업과 소속학과(부) 관련사항 (A4 1장 내로 자유양식)	2.24~5.15
	사업자등록증	2.24~5.15
	전공 SDU 신청서	2.24~3.3(이후신청절대불가)
	4대보험 가입확인서(2차)	5.16~5.30 (추가신청X, 기존 신청사항에 첨부파일 추가)

※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1,2차 제출하는 이유는 학기말까지 재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

※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발급일시가 제출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만 인정

※ 4대보험 가입확인서 2차 제출은 추가 신청이 아닌 기존 신청사항에 첨부파일 추가

<2차 신청 기간 신청자 : 5.16~5.30>

구분	제출서류	제출기간 및 서류 발급일시 (발급일시가 기간내인 서류만 인정)
조기취업자 (근로자)	4대보험 가입확인서	5.16~5.30
조기창업자 (창업자)	4대보험 가입확인서	5.16~5.30
	창업과 소속학과(부) 관련사항 (A4 1장 내로 자유양식)	5.16~5.30
	사업자등록증	5.16~5.30

※ 2차신청기간 신청자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번만 제출

※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발급일시가 제출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만 인정

V 출석/성적인정 및 유의사항

조기 취·창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특례규정

제3조(출결사항)

- ①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학습에 상당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출결을 대체할 수 있다.
- ② 학기 중간에 취업한 학생은 기존의 출석과 취업자 출석인정을 혼합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.

제4조(시험) 제3조에 의해 4분의3이상을 출석인정 받은 경우 추가시험 및 개별시험으로 평가가 가능하다.

제7조(미적용강좌)

- ①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강좌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② 학점교류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타대학의 강좌 및 본 대학교의 강좌는 적용하지 않는다.